

『동남아시아연구』 간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동남아학회(이하 본학회)가 간행하는 『동남아시아연구』(영문명 The Southeast Asian Review,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 1) 학회지의 심사, 편집, 출판,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학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5-10인으로 구성하며, 편집간사 1인을 둔다.
- 3) 편집위원장은 본학회 학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를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4) 편집위원장은 지역별, 학문별 분야를 안배하여 편집위원을 추천하며, 편집위원이 한 대학이나 기관에서 가급적 2인 이상 선임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 5)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간행업무를 주관하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6)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간행과 관련한 제반 규정의 신설 및 수정,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결과의 판정,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 7)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편집위원

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연구대상지역과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가능한 한 배제한다.
- 3)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연구에 종사하는 자 또는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편집규정)

- 1) 본학회는 연 4회, 즉 1호(2월 28일), 2호(5월 31일), 3호(8월 31일), 4호(11월 30일) 학회지를 발간한다.
- 2) 학회지에 게재하는 원고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연구 결과물로 국한하며, 동남아시아와 타 지역 간 비교연구의 결과물도 가능하다. 원고의 형태는 연구논문, 번역, 서평, 연구단편(research note), 학회 참관기 등 학술적 성격이 분명한 글이어야 한다. 이미 출판되었거나 타 학회지에 투고한 원고는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 3) 연구논문의 주저자는 대학원 재학 이상의 연구자를 원칙으로 한다.
- 4) 본 학회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원고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발간일 2개월 전까지 접수된

원고를 해당 호의 심사대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5) 논문 투고자는 원고 제출 시 논문게재신청서 및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국영문 초록이 포함된 논문을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JAMS)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투고자는 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원고를 학회지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연구주제와 내용이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술적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원고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원고집필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 7)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집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언어와 상관없이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8)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연구논문(번역, 연구단편 포함)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 200매(9000단어) 이내, 서평 등 기타 원고의 경우 50매(2250 단어) 이내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 분량이 250매(11250 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편집위원회는 규정한 분량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간행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9)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논문에 기입하여야 한다.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직위를 기입한다.
- 10)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가 한국동남아학회 회원이 아니면 논문 게재 이전에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과정)

제출된 논문은 다음 4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학회지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단계: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즉시 제출된 논문과 논문게재 신청서가 학회지 간행규정에 부합하고 원고집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논문의 연구주제와 내용이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학술적 수준이 현저히 낮지 않은지를 판단한다. 편집위원회는 적합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10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 기한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단계: 심사위원은 심사 기한 내에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또는 학회지 이메일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이 기한 내에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평가서의 제출을 독촉한다. 심사위원이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3단계: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를 완료하는 즉시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수정 논문과 수정 사항설명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요청한다.

4단계: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와 재심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제6조의 심사결과 판정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 결과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받으면 그로써 심사과정은 종료된다.

제6조(심사결과 판정)

- 1) 심사위원은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로 평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아래 심사 판정표를 기준으로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심사위원 평가결과		판 정
A	A	수정 없이 게재
A	B	수정 후 게재
A	C	수정 후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B	C	수정 후 재심
C	C	수정 후 재심
A	D	수정 후 재심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 3) 심사위원과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결과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6조의 2(편집위원의 투고)

- 1) 편집위원은 투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 절차는 제5조와 제6조에 정한 절차와 동일하다.
- 2)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결과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논문 게재료)

- 1) 논문 게재가 결정된 투고자는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투고자의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2) 게재료는 기본적으로 편당 20만원이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에 10만원을 추가하여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집 논문의 게재료도 일반 논문과 동일하다.
- 3)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대학원생 및 미취업자인 저자는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단, 공저자인 전임 연구자는 기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만약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한 원고 분량이 200자 원고지 기준 200매(9000단어)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초과된 원고의 매 10매(450단어)마다 5만 원씩의 간행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저작권) 본학회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소유하며 논문을 공개하고 사용한다.

부 칙 (200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해왔던 이전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5년 11월 2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전의 간행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제반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7. 8.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및 제6조의 변경내용은 학회지 제17권 2호
(2007년 8월 31일 발간)에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6.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2)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

제 4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8)

제 4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

제 6조(심사결과 판정)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호>

『동남아시아연구』 논문게재신청서

성 명	한 글 (한자)	영 어
소 속		최종학위
직 위		전 공
연 락 처	주소 (우)	
	전화 () E-mail	
논 문 제 목	한글 영어/외국어	
논 문 개 요		

<별지서식 2호>

『동남아시아연구』 논문심사평가서

논문제목				
심사자	성명:		소속:	
심사판정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
심사평				